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광고법 제정에 따른 정부광고 관리 인력 1명(6급 1명)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에 신규 시설 관리, 공무원 노무관리 등 기관 별 주요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7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가급 1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 교수 6명, 교사 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중앙극장에 예술박물관의 자료수집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한국정책방송원에 특별생방송 지원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1. 22. ~ 2.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총계 “659”를 “661”로 하고, 일반직 계 “652”를 “654”로 하며,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66”을 “168”로 한다.

별표 1의2 총계 “667”을 “669”로 하고, 일반직 계 “660”을 “662”로 하며,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68”을 “170”으로 한다.

별표 2 총계 “269”를 “277”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68”을 “276”으로 하며, 특정직 계 “167”을 “173”으로 하고,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50”을 “156”으로 하며, 일반직 계 “101”을 “103”으로 하고, 행정주사 “18”을 “19”로 하며, 행정주사보 “10”을 “11”로 한다.

별표 2의2 총계 “93”을 “94”로 하고, 특정직 계 “75”를 “76”으로 하며, 교사 “72”를 “73”으로 한다.

별표 2의3 총계 “77”을 “85”로 하고, 특정직 계 “67”을 “75”로 하며, 교사 “64”를 “72”로 한다.

별표 3 총계 “587”을 “589”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85”를 “587”로 하며, 일반직 계 “584”를 “586”으로 하고, 학예연구사 “148”을 “150”으로 한다.

별표 3의2 총계 “587”을 “589”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85”를 “587”로 하며, 일반직 계 “584”를 “586”으로 하고, 학예연구사 “145”를 “147”로 한다.

별표 4 총 계 및 일반직 계 “51”을 각각 “53”으로 하고, 학예연구사 “14”를 “16”으로 한다.

별표 6 총 계 및 일반직 계 “56”을 각각 “59”로 하고, 전산주사 “1”을 “2”로 하며, 전문경력관 가군(외신논조분석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순방행사취재 담당) 1”를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순방행사취재 담당) “1”을 “2”로 한다.

별표 6의2 총계 및 일반직 계 “56”을 각각 “59”로 하고, 전산주사 “1”을 “2”로 하며, 전문경력관 가군(외신논조분석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순방행사취재 담당) 1”를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순방행사취재 담당) “1”을 “2”로 한다.

별표 8 총 계 및 일반직 계 “93”을 각각 “96”으로 하고, 공업주사보 1 다음에 “시설주사보 1”를 신설하며, 시설서기 1 다음에 “공업서기 1”를 신설하고, 학예연구사 “35”를 “36”으로 한다.

별표 9 총 계 및 일반직 계 “94”를 각각 “95”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93”을 “94”로 한다.

별표 11 총계 “116”을 “117”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115”를 각각 “11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14”를 “11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59</u>	<u>661</u>	+2
·	·	·	
·	·	·	
일반직 계	<u>652</u>	<u>654</u>	+2
·	·	·	
·	·	·	
행정주사 · 사서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임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u>166</u>	<u>168</u>	+2
·	·	·	
·	·	·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67</u>	<u>669</u>	+2
·	·	·	
·	·	·	
일반직 계	<u>660</u>	<u>662</u>	+2
·	·	·	
·	·	·	
행정주사 · 사서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임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u>168</u>	<u>170</u>	+2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69</u>	<u>277</u>	+8
1 .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268</u>	<u>276</u>	+8
특정직 계	<u>167</u>	<u>173</u>	+6
.	.	.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u>150</u>	<u>156</u>	+6
.	.	.	
일반직 계	<u>101</u>	<u>103</u>	+2
.	.	.	
.	.	.	
행정주사	<u>18</u>	<u>19</u>	+1
.	.	.	
.	.	.	
행정주사보	<u>10</u>	<u>11</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2]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93</u>	<u>94</u>	+1
특정직 계	<u>75</u>	<u>76</u>	+1
·	·	·	
·	·	·	
교사	<u>72</u>	<u>73</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3]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3
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77</u>	<u>85</u>	+8
특정직 계	<u>67</u>	<u>75</u>	+8
·	·	·	
·	·	·	
교사	<u>64</u>	<u>72</u>	+8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본문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87</u>	<u>589</u>	+2
1 .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585</u>	<u>587</u>	+2
·	·	·	
·	·	·	
일반직 계	<u>584</u>	<u>586</u>	+2
·	·	·	
·	·	·	
학예연구사	<u>148</u>	<u>150</u>	+2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87</u>	<u>589</u>	+2
1 .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585</u>	<u>587</u>	+2
·	·	·	
·	·	·	
일반직 계	<u>584</u>	<u>586</u>	+2
·	·	·	
·	·	·	
학예연구사	<u>145</u>	<u>147</u>	+2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국립국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1</u>	<u>53</u>	+2
일반직 계	<u>51</u>	<u>53</u>	+2
·	·	·	
·	·	·	
학예연구사	<u>14</u>	<u>16</u>	+2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6</u>	<u>59</u>	+3
일반직 계	<u>56</u>	<u>59</u>	+3
·	·	·	
·	·	·	
전산주사	<u>1</u>	<u>2</u>	+1
·	·	·	
·	·	·	
전문경력관	1		
가군(외신논조분석 담당)			
전문경력관			
<u>가군(순방행사취재 담당)</u>	<u><신 설></u>	<u>1</u>	+1
·	·	·	
전문경력관			
나군(순방행사취재 담당)	<u>1</u>	<u>2</u>	+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6</u>	<u>59</u>	+3
일반직 계	<u>56</u>	<u>59</u>	+3
·	·	·	
·	·	·	
전산주사	<u>1</u>	<u>2</u>	+1
·	·	·	
·	·	·	
전문경력관	1		
가군(외신논조분석 담당)			
<u>전문경력관</u>	<u><신 설></u>	<u>1</u>	+1
<u>가군(순방행사취재 담당)</u>			
·	·	·	
전문경력관	<u>1</u>	<u>2</u>	+1
나군(순방행사취재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3</u>	<u>96</u>	+3
일반직 계	<u>93</u>	<u>96</u>	+3
·	·	·	
·	·	·	
공업주사보	1		
<u>시설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시설서기	1		
<u>공업서기</u>	<u><신 설></u>	<u>1</u>	+1
·	·	·	
·	·	·	
학예연구사	<u>35</u>	<u>36</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국립중앙극장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4</u>	<u>95</u>	+1
일반직 계	<u>94</u>	<u>95</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93</u>	<u>94</u>	+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5항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16</u>	<u>117</u>	+1
1 .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115</u>	<u>116</u>	+1
일반직 계	<u>115</u>	<u>116</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14</u>	<u>115</u>	+1
.	.	.	
.	.	.	